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영문명) SHINYOUNG REAL ESTATE TRUST CO., LTD.
(홈페이지) <http://www.shinyoungr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9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전 화) 02-6256-7800

대 표 이 사 : 박 순 문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임 성 식 (전 화) 02-6256-7920

작 성 자 : (직 책) 경영지원부장
(성 명) 서 석 경 (전 화) 02-6256-7921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1호)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6가합3952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1. 군자새마을금고 2. 새마을금고중앙회 3. 화성새마을금고 4. 성남제일새마을금고 5. 성남동부새마을금고 6. 군포새마을금고 7. 고양동부새마을금고 8.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9.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10. 화산새마을금고
3. 청구내용	고양시 화정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사업 관련 당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청구금액 : 총 210억원)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한 소송 대응
6. 제기일자	2026. 02. 11.
7. 확인일자	2026. 03. 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재산의 분양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상환 및 회수 진행 중임 - 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합의하여 소 취하될 수 있음 -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거나 없을 수 있음 - 해당 건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충당금을 기 설정하고 있음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